

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의 신고사건과 소비자보호원의 피해구제업무 연계 추진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위의 소비자보호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나 불공정한 약관으로 인해 발생한 소비자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도록 '98년 6월 10일(수)부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된 사건을 한국 소비자보호원의 피해구제업무와 연계해 나가기로 하였다.

현재 공정위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된 사건에 대하여 사업자의 공정거래법 또는 약관규제법의 위반여부를 심사하여 시정조치하는 데 그치고 소비자피해구제업무를 다루지 않고 있어서 사업자의 부당행위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는 당해 소비자가 별도로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한국소비자보호원이나 은행감독원 등의 분쟁조정기관에 피해구제를 청구해야만 구제를 받을 수 있어,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절차가 번잡하고 피해구제에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등의 불만이 있어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와 같은 소비자의 불만을 해소하고 소비자가 신속하게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우선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 처리와 관련이 많은 소비자보호원의 피해구제업무를 우선적으로 연계하여 추진하기로 했다.

6월 10일부터 공정위 신고사건의 소비자피해구제업무를 연계하게 된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소비자보호법에 의해 소비자의 물품이나 용역의 사용·이용으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소비자보호원의 피해구제는 소비자의 피해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소비자보호법 제28조제2항에 의해 사업자의 피해 및 국가·자치단체·변호사·금융기관·보험회사·증권회사·의료기관의 행위로 인한 소비자피해는 그 구제대상에서 제외된다. 소비자보호원의 피해구제 절

차는 소비자보호법 제42조 내지 제45조에 의해 소비자의 피해구제 청구가 있으면 당사자에게 피해보상에 관한 합의를 권고하고, 합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정 결정하며, 조정안을 당사자가 수락하면 조정안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된다. 또한 소비자보호법 제39조에 의해 당사자인 소비자뿐 아니라 소비자의 피해청구를 받은 국가나 자치단체, 소비자단체, 사업자도 피해구제처리를 의뢰하는 것이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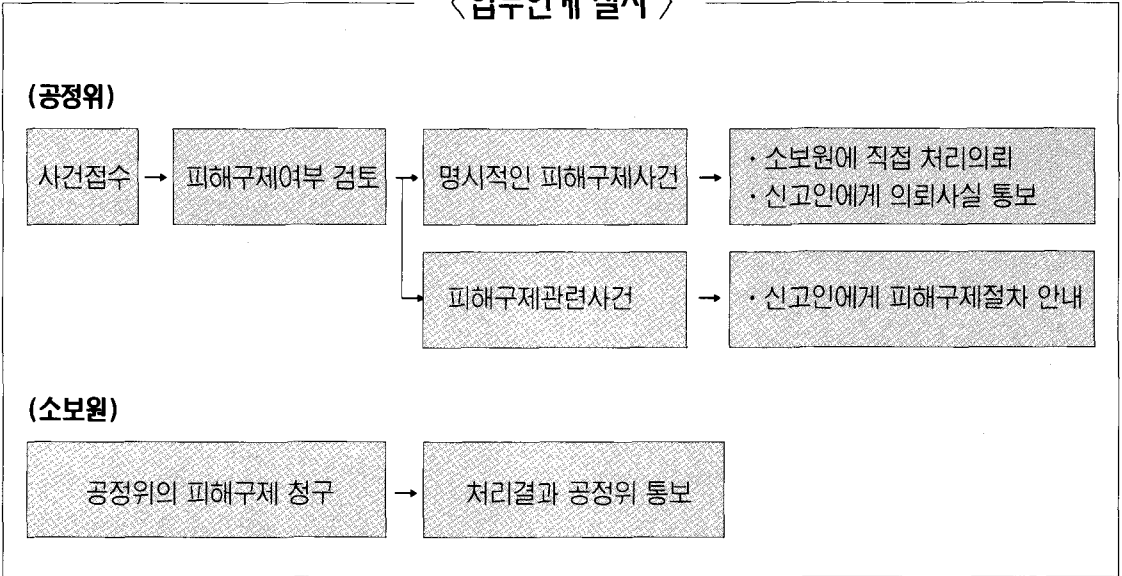
공정위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된 사건 중 소비자가 사업자의 부당행위의 시정과 함께 그로 인한 피해구제를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공정위가 소비자를 대신하여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직접 그 피해구제의 처리를 의뢰하고 이와 같은 의뢰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려주기로 하고, 소비자의 신고내용에 사업자의 부당행위로 인한 피해구제를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내용은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 신고내용으로 보아 피해구제를 원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비자에게 한국소비자보호원의 피해구제절차를 안내해주기로 하였다. 또한 필요시에는 대한상사중재원, 지방변호사회, 은행감독원, 보험감독원, 증권감독원, 의료분쟁조정위원회 등 분쟁조정기관의 피해구제절차를 안내해 줄 방침으로 있다. 동 피해구제절차는 공정거래법 또는 약관법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각하처리시에, 법적용대상인 경우에는 사건착수보고시에 안내하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공정위의 소비자보호원과의 소비자 피해구제업무의 연계 추진은 소비자피해구제 업무에 있어서 One-Stop Service를 실현하고 고객만족행정서비스를 제고하는 효

과가 예상되므로, 공정위의 신고사건과 관련이 많은 한국소비자보호원과의 업무연계를 우선 추

진해 본 다음 은행감독원 등 다른 피해구제기관과의 업무연계도 추진해나갈 방침으로 있다.

〈업무연계 절차〉



용어해설

다자간투자협정 (MAI)

다자간투자협정(MAI: Multilateral Agreement on Investment)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 직접 투자의 보호와 촉진을 목적으로 OECD가 '95년 5월부터 논의를 시작하여 체결을 추진하고 있는 다자간 투자규범이다.

우리 나라는 OECD 가입 이후 29개 OECD 회원국과 EC와 더불어 '96년 12월 10차 MAI 협상부터 참여하고 있다.

OECD 회원국들은 1970년대에 외국인 직접투자와 다국적기업의 활동이 국제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점차 부각됨에 따라 1976년에 '국제투자 및 다국적기업에 관한 선언'을 채택하였다. 동 선언에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내국민대우를 인정하고, 노사관계, 영업보호비밀, 기술이전 등 다국적기업의 활동지침과 아울러 국제투자에 관련한 투자유인 및 제한제도 등 세부지침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지침이 외국인투자에 대한 부분적인 내용만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95년 9월부터 OECD 다자간투자협정(MAI)에 대한 협상을 시작하였으며, '97년 5월말 최종협정문을 제출하기로 하였으나 각 회원국간의 의견대립으로 '98년 4월까지 협상 종료시한을 연기하였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타결전망이 불투명하다. 협상이 연내에 타결될 경우 MAI는 각국의 국내법 절차를 거쳐 2000년부터는 시행될 예정이다.

MAI의 원칙을 세 가지로 요약하면 첫째, 이 협정은 최고수준의 투자규범으로서 이 협정이 지향하는 투자자유화는 외국기업의 직

접투자에 대한 정부의 간섭을 최소화하고 궁극적으로는 철폐하는데 있다. 둘째, 이 협정은 투자자유화·투자자보호·분쟁해결·조세 등 국제투자와 관련된 모든 분야를 망라한 포괄적인 규범의 제정을 지향하고 있다. 셋째, 이 협정은 OECD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지만 후에는 OECD로부터 독립된 별개의 국제조약으로 만든다는 것이다.

MAI에서는 투자의 개념을 기존의 기업 설립뿐 아니라 주식·증권·채권 등 포트폴리오 투자, 차관·신용·예금 등 각종 청구권, 지적소유권, 부동산 매매 등 유·무형의 모든 자산으로 넓혀 정의함으로써 기존의 어떠한 투자규범보다도 포괄범위가 넓으며 외국인 투자와 투자가에 대한 내국민대우와 최혜국대우를 구속적인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WTO가 규정하는 국가간 분쟁해결절차뿐 아니라 개별투자가가 직접 국가를 대상으로 분쟁을 제기할 수 있는 등 강력한 분쟁처리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우리 나라도 MAI 발효 이후 중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분쟁조정에 대비하여 투명성에 배치되는 정책관행의 개선을 통한 투자관련 규범을 국제수준으로 높여야 한다. 또한 외국자본 유입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물가안정, 재정균형, 환율안정 등 건전한 거시경제 정책운용이 필수적이다. 우리 나라는 MAI 참여국과 이에 참여하지 못한 개도국 간의 통상마찰에서 중간자적인 입장에 놓이게 되므로 이를 중재할 수 있는 통상외교정책의 강화도 필요하다.